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등) 및 용어 정비(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등)

그간 법률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개정(별지 제3호서식)

접촉자조사 수집정보를 정비하여 접촉자의 결핵 감염 등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함으로써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함

다. 기타 오탈자 수정(별지 제1·2호서식)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2조”를 “제1조의2제1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 중 “특히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을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을”을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

기관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별지 제1호서식 (14) 초회 검사 종류란 중 “Xpert MTB/RIF검사”를 “Xp
ert MTB/RIF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 (15) 중 “흉부X4
선검사”를 “흉부X선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7) 초회 검사 결과란 중 “Xpert MTB/RIF검사”를 “Xp
ert MTB/RIF검사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합니다.

(1/2쪽)

1. 명부목록													
(1) 전염성결핵환자			(2) 접촉자										
			인적사항				초회 검사		추구(追求) 검사		치료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성명	관계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항목	결과	항목	결과	방법	결과	

2. 접촉자별 상세 정보	
가. 접촉자 검사 관련 사전 조사	
(3) 현재 결핵 증상 유무	[]없음 []기침 []객담(가래) []흉통 []호흡곤란 []체중감소 []아간발한 []발열 []객혈 []그 밖의 증상
(4) 과거 결핵 치료 여부	[]없음 []있음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진단받은 연도(년) - 치료 결과 []완치 []중단 []모름
(5)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없음 []있음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진단받은 연도(년) - 치료 결과 []치료완료 []치료중 []미치료
(6) 임신 여부	[]아니요 []예 []해당없음
(7) 최근 4주 내 생백신 접종 이력	[]없음 []있음(접종일: 년 월 일) []모름 (생백신 종류 : MMR, 수두, 인플루엔자 접종 중 생백신(분무식), 일본뇌염접종 중 생백신, 대상포진, 황열 등)
(8) BCG 접종 유무	[]없음 []있음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생후 1년 이내 []생후 1년 이후 []모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시행한 경우는 생후 4주 이내 접종)
(9) 켈로이드 체질 여부	[]없음 []있음 []모름
(10) 주사 공포증 유무	[]없음 []있음 []모름
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11) 기저질환	[]없음 []있음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면역억제제복용 []TNF길항제 사용자 []규폐증 []스테로이드복용 []만성신부전증 []당뇨 []두경부암·혈액암 []위·장절제 []면역저하질환 ()
(12) 흡연 여부	[]비흡연 []피웠으나 현재 금연 []흡연
다. 결핵환자와의 접촉력에 관한 사항	
(13) 결핵환자 마지막 접촉일	년 월 일
(14) 결핵환자 접촉 시간	[]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 100시간 이상 ~250시간 미만 [] 250시간 이상~500시간 미만 [] 500시간 이상

작성 방법

1. 명부목록 : 보건당국(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 (1) 전염성결핵환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접촉자: 성명, 결핵환자와의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접촉자 초회검사 및 추구검사 항목과 결과를 기재하고, 치료 방법과 결과를 기재합니다.
-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명을 적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연락처: 검사 및 추후 관리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되, 본인 연락처가 없으면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접촉자별 상세항목: 가~나 항목은 접촉자가 기재합니다. 다 항목은 보건당국(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가. 접촉자 검사 관련 사전 조사

- (3) 현재 결핵 증상 유무: 현재 결핵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증상에 √ 표시합니다.
- (4) 과거 결핵 치료 여부 : 이전에 결핵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받은 연도 및 치료 결과를 기재합니다.
- (5)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 이전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받은 연도 및 치료 결과를 기재합니다.
- (6) 임신 여부: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예' 항목에 √ 표시합니다.
- (7) 최근 4주 내 생백신 접종 이력: 작성일 기준으로 4주 내 생백신 접종력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 (8) BCG 접종 유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접촉자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접종 시기에 √ 표시합니다.
- (9) 켈로이드 체질 유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접촉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켈로이드는 외상의 경계를 넘어서 진행되는 융기된 흉터로, 켈로이드에 해당 시 √ 표시합니다.
- (10) 주사 공포증 유무: 주사 공포증 유무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11) 기저질환: 현재 해당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표시합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인 경우, TNF길항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 규폐증, 스테로이드를 15mg/일 이상,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 만성신부전증(투석 중인 경우), 당뇨병, 두경부암, 혈액암, 위절제술 또는 공회장우회술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외 면역 저하 질환(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 * TNF 길항제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건선 등 만성 염증성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성분명은 인플릭시맵(infliximab), 아달리무맵(adalimumab), 에타너셉트(etanercept), 아펠리모맵(afelimomab), 세톨리주맵 페골(cetolizumab pegol), 골리무맵(golimumab)등이 있음
- (12) 흡연 여부 : 흡연 여부를 기재합니다.

다. 결핵환자와의 접촉력에 관한 사항

- (13) 결핵환자 마지막 접촉일: 접촉자가 결핵환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짜를 기재합니다.
- (14) 결핵환자 접촉한 시간: 접촉자가 결핵환자의 전염성 추정 기간에 만난 총 누적 시간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u>관할 보건소장에게</u> <u>지체 없이</u>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 ----- ----- ----- ----- ----- ----- ----- --- <u>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2. ----- ----- ----- ----- -----

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생 략)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
사

다.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
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1조의2제1호 -----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준수사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필요하다고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

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생략)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

3. -----

-----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

4. (현행과 같음)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

-----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

1. -----
-----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u>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u>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u>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u>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u>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u>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u>감염병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u>
---	---